

4. 운영 방식에 따른 학교현장실습 구분

구분	운영주체	운영 방식	예시
직접실습	실습학교	대면	실습학교 대면 수업(교육과정 운영)에 참여
		원격	실습학교 원격 수업(교육과정 운영)에 참여
간접실습	교원양성	대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면으로 참여
	기관의 장	원격	대학에서 제공하는 과제 해결 및 원격 연수 이수

5. 학교현장실습 시작 전 2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필수

: **실습 시작 전 2일 이내(토요일) 신속항원검사** 후 해당 결과 교직지원부에 제출 및 실습 시작 후 실습 학교 제출

* 예시) 4. 4.(월) 실습 시작 시 4. 2.(토)~4. 3.(일) 검사 후 확인서 발급 필요

가. 대학 제출

: **음성 확인서** 발급 후 사진 촬영이나 스캔 파일로 실습 시작 전날까지 교직지원부에 **이메일**로 제출(사진 촬영 시 인적사항 및 발급일이 보이도록 해야 함)

* 이메일 주소: hyeon951@jj.ac.kr

나. 실습 학교 제출

: **실습 시작 일에 음성 확인서 지참 후 제출**

다.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시

: PCR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 후, 실습 시작일 오전 9시 전 실습 학교 담당 선생님께 연락 필요 (교직지원부에는 오전 9시 이후 연락)

라. 주의사항

- 1) **신속항원검사는 자가 진단 키트로 하는 검사가 아닌 병원에서 하는 검사** 이므로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2) 학교현장실습생 모두 월요일부터 실습을 시작하고 실습 시작 전 2일 이내 검사를 해야 되므로 반드시 **토요일 오전에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신속항원검사 가능 시간: 토요일 08:30~13:00(검사 기관별 상이)
- 3) 대학 제출 및 실습 학교 제출을 위하여 반드시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출해야 함

6. 학교현장실습 간 방역 수칙은 실습 학교의 지침을 따름

가. 실습 학교의 교원 출근 기준을 실습생에게 동일하게 적용

* (예시) 실습 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 전체 교사가 재택 근무하는 경우, 실습생도 동일하게 적용

나. 방역 지침에 따라 실습생에게 실습 학교 교원 검사 기준 동일 적용

* (예시) 실습 학교 교원이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습생도 주 1회 검사 실시